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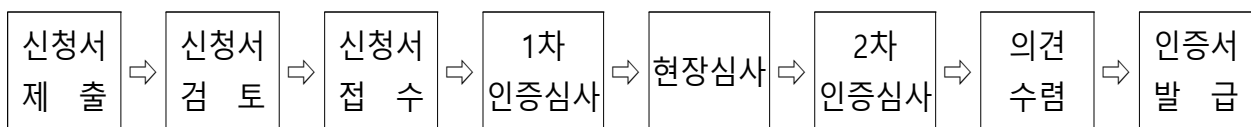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7. 1. (수) ~ 7. 31. (금)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붙임 1 참고)
2. 재난안전제품 설명서(붙임 2 참고)
3. 청렴 서약서(붙임 3 참고)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5항)

□ 추진 일정

주요내용	제 2 회	2021년 (예정)
신청서 제출	7월	2021년도 인증심사 2회 또는 3회 시행 예정
신청서 검토 및 접수	8월	
1차 인증심사	8월 ~ 9월	
현장심사	9월	
2차 인증심사	10월	
의견수렴	11월 ~ 12월	
인증서 발급	12월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	-----	----------

신청인 정보	업체명 (성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 연구원(소) []정부출연 연구원(소) []대학교 []기타							
	소재지 (주소)	(본사)						
	(공장)							

신청제품	제품명	모델명(규격),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사유						
	매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억원	수출액(전년도 실적, 해당 연도 계획)	만\$			
	주 수요처						
	제품 설명(요약)						

업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전자우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6쪽 중 제1쪽)

일반현황	신청제품명	한글		
		영문		
	업체명	한글		
		영문		
	소재지	한글		
		영문		
	대표자	한글	전화번호	
		영문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총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신청제품 매출액 (백만원)	직전년도	신청제품 수출액 (천\$)	직전년도
		금년실적 및 계획		금년실적 및 계획
	주 생산물			
주 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국내			
	국외			
신청제품 주 경쟁업체	국내			
	국외			
인증실적	[] 신기술/신제품 인증 [] 우수조달제품 [] 기타 기술인증 인증명(제품명)			
동일 품목의 기 인증 여부				

신청제품 설 명	용도	
	제품의 구조	
	제품 작동원리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	

품질경영 체 계	상품·가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	
	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	
	불합격시의 조치계획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기타 품질 경영 사항	

청렴 서약서(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신청제품명 :

본 사(인)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하